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99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3월 3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,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 자문,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의 평가와 환류, 상임위원회 보고를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을 수정·보완하였음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정의를 수정함(안 제2조).
-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있어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의 자문,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의 평가와 환류·상임위원회 보고를 신설함(안 제6조).
-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을 삭제하고 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」를 신설함(안 제11조).
-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지원기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함(안 제13조)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중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” 을 “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「소상공인기본법」” 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.
-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안 제8조제2항제1호 중 “시책” 을 “시책(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다)” 으로 하고, 같은항 제2호 중 “근로” 를 “노동” 으로 하며, 같은항 제7호 중 “활성화” 을 “활성화” 로 한다.

안 제9조제1항제3호 중 “적하한” 을 “적합한” 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

제2호 중 “시책” 을 “시책(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한다)” 으로 한다.

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조세의 감면)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」와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안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지원기관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치구 소상공인회와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기관, 단체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 <u>소상공인기본법</u> 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<u>서울특별시</u> 에 <u>사업장을 둔</u> 「 <u>소상공인기본법</u> 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
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~ ② (생략)	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~ ② (생략) (제정안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<u><신설></u>	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<u><신설></u>	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8조(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) ① (생략)	제8조(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) ① (제정안과 같음)
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	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1.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창업한 소상공인의 성장·발전을 위한 <u>시책</u>	1.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창업한 소상공인의 성장·발전을 위한 <u>시책(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다)</u>
2.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, <u>근로환경</u> 개선,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시책	2.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, <u>노동환경</u> 개선,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시책
3. ~ 6. (생략)	3. ~ 6. (제정안과 같음)
7.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<u>활성화</u> 등 국제화 촉진을 위	7.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<u>활성화</u> 등 국제화 촉진을 위

제정안	제정안
<p>한 시책</p> <p>8. ~ 11. (생략)</p> <p>제9조(소상공인 보호)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분야·장소·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<u>적하한</u>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책</p> <p>②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, 취업,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<u>시책</u>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제11조(조세의 감면)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「<u>조세특례제한법</u>」, 「<u>지방세특례제한법</u>」, 그 밖의 <u>관계 법률</u>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<u>지원기관의 설치</u>)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>② 시장은 <u>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</u></p>	<p>한 시책</p> <p>8. ~ 11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9조(소상공인 보호)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3.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분야·장소·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<u>적합한</u>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책</p> <p>②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, 취업,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<u>시책(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한다)</u>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제11조(조세의 감면)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「<u>지방세특례제한법</u>」, 「<u>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</u>」와 그 <u>밖에 법령</u>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<u>지원기관 등의 설치</u>)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<u>자치구 소상공인회와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시장은 <u>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</u></p>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정부의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소상공인의 책무)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 등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

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시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 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
2.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
3. 소상공인의 경영안정, 시설개선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
4.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
5.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
6.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
7.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
8. 관련 시민단체,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
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-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실태조사 및 통계작성)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) ① 시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창업한 소상공인의 성장·발전을 위한 시책
(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다)
2.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

- 공급, 노동환경 개선,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시책
3.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
 4.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를 위한 시책
 5.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
 6. 소상공인의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,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
 7.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
 8. 소상공인의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시책
 9.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시책
 10.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, 장비, 시스템, 서비스 등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
 11.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 지원을 위한 시책

제9조(소상공인 보호)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
2.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

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시책

3.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·장소·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책
- ②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1.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
 2.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, 취업,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(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서울시내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)
 3.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시책
 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

제10조(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)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조세의 감면)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」와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2조(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) ① 시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·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원기관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치구 소상공인회와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 등을 위해 자치구 별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과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기관, 단체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사용하는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한”을 “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부터 제7조까지, 제10조 및 제10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 중 “조례 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조례의 시행에”로, “정할 수 있다”를 “정한다”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9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”를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”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으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으로 한다.